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2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정희용·고동진·김선교

박덕흠 • 김형동 • 임종득

윤재옥 • 박수민 • 김상훈

신성범・김 건・이종배

박상웅 · 임이자 의원

(14인)

제안이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2030년 까지의 세부실천목표,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2022년 12월).

한편, 산림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재해 및 산림보호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산림환경이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기능과 보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조항을 보완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어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등의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산림보호법」에서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함.
- 나. 이 법은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 산림경관 등을 비롯한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다. 체계적인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산림환 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등의 보전목표를 수립하고, 산림환경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효과성

평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및 산림생태탐방 육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 24조까지).

- 바.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지정 주기, 보전대책 수립 및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사. 보호수의 지정·지정해제, 관리, 행위제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및 현황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 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 전조치의 실행 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현지외보전원의 조성·지 정,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 자. 산림오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원의 고용, 민간 활동의 지원, 산림환경보호에 관한 교육·훈련·조사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협회 설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 차.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련 연구·기술개발 의 촉진 및 국제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0조 및 제52조).
- 카. 수목진단 및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나무의사등의 자격취득, 나무 병원의 등록, 한국나무의사협회, 처방전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3조부터 제64조까지).
- 타.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

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림환경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 산림경관 등을 비롯한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산림환경"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생태계를 말한다.
- 2. "산림생태계"란 산림에서 생물과 환경의 유기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한 유형을 말한다.
- 3. "산림생물다양성"이란 산림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 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4.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산림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5. "산림생물자원"이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을 말한 다.
- 6. "특별산림보호종"이란 산림생물자원 중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취약하거나 생태적 · 경제적 · 문화적 ·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종으로서 제25조에 따라지정된 종을 말한다.
- 7.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 내 보전·관리가 필요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숲을 말한다.
- 8.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서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 9. "현지외보전원"이란 산림생물자원을 그 산림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을 말한다.
- 10.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란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

대계의 기능, 생대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을 달성하고, 문화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및 그 밖에 지역에 관련된 가치를 실현하는 조치를 말한다.

- 11.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 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1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56조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13.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14.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59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산림환경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 2. 산림생태계의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 할 것
 - 4. 산림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

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환경보호의 책무를 지며, 지속가능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 화를 추구하고 산림을 건강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에 적극 협조하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시행되는 지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환경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2장 산림환경보호 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산림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한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산림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호·관리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 2.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관리에 관한 사항
- 4.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회복에 관한 사항
- 5.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에 관한 사항
- 6.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 7. 산림화경보호를 위한 조사 · 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산림환경의 효과적인 보호·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 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역계획, 시·군·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있다.
 - ③ 그 밖에 지역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가 건 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하 "산림의 건강·활력도"라 한다)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활력도를 조사·평가한 결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기준·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 내 물질의

순환 및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 단절·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산림생태계의 연결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림생태계 연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생물자원 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전산화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림보호구역 등

- 제13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례시의 장은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 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5.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과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 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지정 사유
 - 2. 구역의 구분
 -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3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 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 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 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

려야 한다.

-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때에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고, 「산지 관리법」 제3조의5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 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1. 산림보호구역 보전 · 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2. 산림보호구역의 보전·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산림보호구역의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 4. 산림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의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산림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④ 산림청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시·도지사, 특례시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5 년마다 관할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 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시·도지사, 특례시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계획과 지역관 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제16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 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 2. 임산물의 굴취(掘取) · 채취
- 3. 입목 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4. 가축의 방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 2.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면적·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산림생물다양성의 조사·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2.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의 교육·탐방 및 안내 시설
-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18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 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 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 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 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8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있다.
 -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 2.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 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 1.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 2. 구역의 구분
-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 제20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수 있다.
 - 1. 곶자왈
 - 2. 풍혈지

- 3. 산림습원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④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 항의 산림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이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립공원 안의 산림보호구역 관리 등)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조사・보존 및 연구
 - 2. 산림병해충의 방제
 - 3. 산불예방
 - 4. 산림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 관리
 - 5.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산림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 공원관리청이 개설 · 운영하는 탐방로
- 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제24조(산림생태탐방의 육성 등) 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에서 산림생태탐방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산림생태탐방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림 생태탐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림생태탐방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림생물자원 보호 제1절 특별산림보호종 보호

제25조(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특별산림보호종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

- 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특별산림보호종의 선정기준·종류·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특별산림보호종 보전대책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산림보호종의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의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에 대한 보전대책의 시행과 특별산림 보호종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점용자·사용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있다.
 - ⑤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특별산림보호종의 관리)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

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또는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산림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산림보호종의 보존·관리·증식·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특별산림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산림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 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산림보호종의 굴취·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따른다.
 - 1.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

록한 수목원에서 전시 ·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그 밖에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이 굴취·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종의 굴취·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생태숲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교육· 탐방·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 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⑤ 생태숲의 지정·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호수의 관리 및 지원

- 제30조(보호수의 지정·고시)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지정 사유
 -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 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4호 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31조(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2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33조(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 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

수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다만,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소실(燒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보호수 현황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수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 의 장,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전을 위하여 상시적인 질병·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하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이라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호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 2. 보호수의 병해충 피해 등 예방 및 치료행위
- 3. 보호수 주변 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4. 보호수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5. 그 밖에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호수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산림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

- 제37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을 위한 다음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생태숲과 수목원 · 정원의 조성 사업
 - 2. 산림생물다양성의 조사 및 관리 사업
 - 3. 산림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식 사업
 - 4. 산림생물다양성의 연구 및 개발 사업
 -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38조(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실행 지역의 지정 등) ① 산림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 치가 실행되는 지역(이하 "기타보전조치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공익용산지 중 다음 각목의 지역
 -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나.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다.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바. 그 밖에 공익용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산림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른 기타보전조치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기타보전조치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기타보전조치지역 보전 · 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2. 기타보전조치지역의 보전 · 복원 · 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조사 · 연구 · 평가에 관한 사항
 - 4.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기타보전조치지역의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산림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기타보전조치지역 시행계획(이 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산림청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기타보전조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0조(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타보전조치지역 내에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호·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 · 관리 사

- 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 사업의 내용·시행방법·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생물다양성 보호·관리 사업 등 기타보전조치지역 내 산림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 효과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의 모니터링 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특별산림보호종의 서식지 파괴 등 산림생물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제한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 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 여야 한다.
- ①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현지외보전원의 조성·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현지외보전원을 조성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지외보전원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현지외보전원의 조성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이하 "산림생물자원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1. 산림생물자원을 보전 · 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2. 특별산림보호종, 보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가치가 높 은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
 - 3. 산림생물자원의 수집, 증식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시설
 - 4. 산림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
 - 5. 그 밖에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
 -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생물자원이용시설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림생물자원이용시설의 설치·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산림환경보호 활동 및 지원 제1절 산림환경보호 활동 등

- 제44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2.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제45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 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 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림의 훼손·오염 방지 및 계도
 - 2.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3. 산림병해충 예찰
 - 4. 산불예방활동
 -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7조(산림환경보호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환경의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8조(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 산림환경의 보호에 관한 교육 ·훈련, 조사 및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산림환 경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림환경의 보호에 관한 교육 훈련
 - 2. 산림환경에 관한 조사
 - 3. 산림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술 · 정보의 국제교류
 - 4. 산림환경 보호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 5. 그 밖에 산림환경 보호 관련 업무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명예산림보호감시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환경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감시원(이하 "명예산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 임업인
 -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자
 - ② 명예산림보호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활동
 - 2. 산림보호를 위한 지도와 계몽 활동
 - ③ 위촉권자는 명예산림보호감시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④ 위촉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산림보호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명예산림보호감시원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연구·기술개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 능한 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2. 산림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평가
 - 3.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4. 산림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5.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조사 및 연구
 - 6. 외래식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7. 그 밖에 산림의 보전 · 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1조(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모니터링센터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③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국제협력) 산림청장은 산림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산업인력·기술의 교류,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수목진단 및 보호

- 제53조(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피해예방 · 진단 · 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나무의사등의 자격 취득)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57조

- 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57조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등"이라 한다)는 동 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⑥ 나무의사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5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제55조(나무의사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등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6조(나무의사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나무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 ④ 나무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 3.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5. 나무의사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 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 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2조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시설·단체를 나무의 사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64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

- 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59조(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자본금 등의 등 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또는 제6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4. 제59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5.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 6.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7. 폐업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

- 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61조(한국나무의사협회) ①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 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 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2조(처방전의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 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 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③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 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한다.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4.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내용·방법·절차·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4조(보고·검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제57조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
 - 2. 제59조에 따른 나무병원
 - 3. 제61조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 4. 제63조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 조사·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1.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조사등의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나무의사등이 제5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65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6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 제2호를 위반한 자
 - 2.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54조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2. 제56조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제6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56조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 2. 제57조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 정명령
- 3. 제60조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6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제7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1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특별산림보호종의 보전, 보호수의 안전관리사업, 산림 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특별산림보호종의 보전 및 보호수의 안전관리사업, 산림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제8장 벌칙

- 제72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산림보호종을 벌채·굴 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 ④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 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 거나 이를 알선한 자
-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7조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등의 양 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9조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 한 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 2.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등
- 3. 제54조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 4. 제56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등
- 5.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 를 한 자
- 6. 제59조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
- ⑦ 제3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 에 처할 수 있다.
- ⑧ 상습적으로 제3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⑨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3조(몰수와 추징) ①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

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 한다.
-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2조제5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2조제8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채취를 한 자
 - 2.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 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4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 2.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 3.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 4.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 5.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 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 2. 제44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 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특별산림보호종으로 본다.
- 제3조(산림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림보호구역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림보호구역으로 본다.
- 제4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으로 본다.
- 제5조(생태숲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태숲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 태숲으로 본다.
- 제6조(보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호수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 호수로 본다.
- 제7조(입산통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입산통제구역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입산통제구역으로 본다.
- 제8조(산림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림정화구역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산림정화구역으로 본다.
- 제9조(숲사랑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감시원으로 본다.
- 제10조(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으로 본다.
- 제11조(나무의사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는 이 법의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로 본다.
- 제12조(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은 이 법의 제57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으로 본다.
- 제13조(나무병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은 이 법의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으로 본다.
- 제14조(한국나무의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나무의사협회로 본다.
- 제1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행한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특별산림보호종, 수목진료 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는 이 법에 따라 행 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벌금의 부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 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산림환경보호법」 제72조제1항의 죄
-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산림보호구역, 생태숲, 산림생태원, 보호수, 숲사랑지도원, 나무병원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